

c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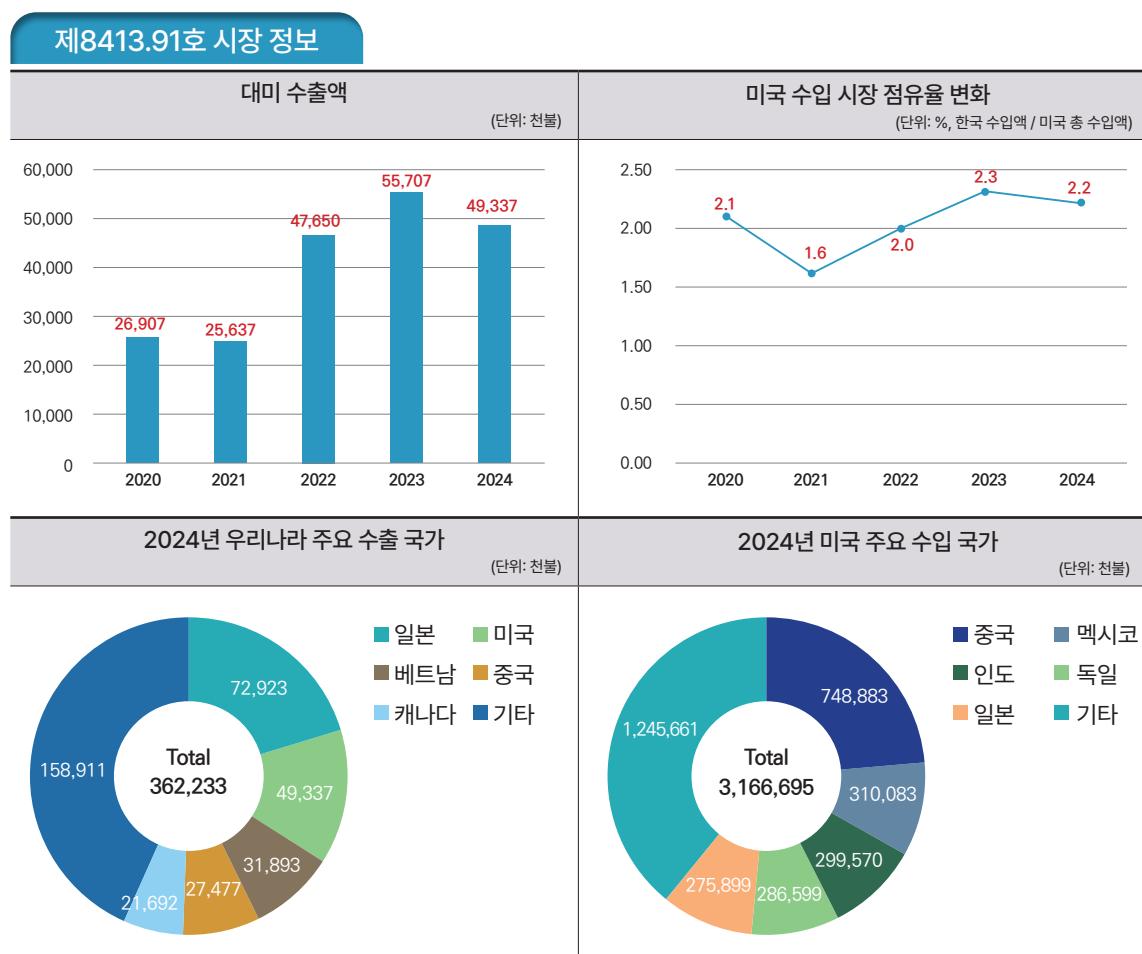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요약

사례명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3089 (2021.02.16.)
사실관계	중국산 부품(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을 캐나다로 수입한 뒤, 캐나다산 결합 부품 (샤프트, 볼 베어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하여 펌프 엔드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종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은 중국산 임펠러이며, 캐나다에서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이므로 캐나다에서 공정을 통해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변화했다고 볼 수 없음또한 최종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은 실제 유체를 이동시키는 주요 기능에 관여하나, 캐나다산 부품은 이러한 주요 부품을 단지 밀봉하고 결합하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중국산 부품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결과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산 부품이 최종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더욱 높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13.91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미국 기본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3089 (2021.02.16.)

사실관계

요청자 Sulzer Pump Solutions, Inc. (대리인: Kelley Drye & Warren LLP)

제품명	•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입 벨 (중국산) 펌프 샤프트 (캐나다산) 임펠러 (중국산) 흡입 볼 (중국산) 잠금 콜릿 (캐나다산) 어댑터 플랜지 (캐나다산) 흡입 스트레이너 (캐나다산) 볼 베어링, 흡입 벨 베어링 (캐나다산) 임펠러 마모 링, 고정 마모 링, 스러스트 링 (캐나다산) 스러스트 링 리테이너 (캐나다산)
용도	• 액체 이동용	
완제품 HTSUS	• 8413.91.90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중국산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
2. 캐나다 제조 공정
 - 고객 사양에 맞게 임펠러 트리밍
 - 흡입 벨을 생산 테이블에 장착 및 안정화
 - 펌프 엔드가 식수용으로 사용될 경우 임펠러를 제외한 모든 주조품에 내부 코팅
 - 흡입 볼을 흡입 벨에 볼트로 고정
 - 펌프 샤프트를 흡입 벨 내부에 삽입
 - 임펠러를 샤프트 안으로 밀어 넣고 잠금 콜릿으로 고정
 - 어댑터 플랜지를 샤프트 위에 끼우고 상단 볼에 볼트로 고정하여 임시 펌프 엔드 완성
 - 테스트 후 균형 조정, 트리밍, 연마 등 추가 가공 수행
 - 펌프 엔드 외부에 페인트 코팅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로 이루어짐

- CBP는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을 ①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의 변화, ②본질적 성질의 변화, ③상업적 용도의 변화를 겪은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 또는 자재들이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로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소한 공정인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제조 또는 조립 과정이 단순한 공정(minor process)으로서 원재료가 공정 후에도 본질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사례 중국산 전기 모터를 멕시코로 수입하여 멕시코산 부품(펌프 하우징, 씰, 터미널 커넥터 하우징 등)과 같은 부품을 압입하여 펌프 어셈블리를 생산하였으며, 후에 성능 및 누출 테스트를 거친 후 세척, 라벨링 및 육안 검사 수행

관련 법령 및 분석

판정

완성된 펌프 어셈블리의 본질은 전기 모터에 있으며 나머지 부품을 조립하고 검수하는 과정은 전기 모터를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시킬 만큼 복잡한 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3043 (2019.04.18.)*

사례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된 부품을 세르비아로 수입하여 스템핑, 경화, 권선, 크림핑 등과 같은 공정을 거쳐 스테이터 서브 어셈블리 제조.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을 사용하여 로터 하우징의 자화 및 성형, 세르비아산 임펠러를 로터에 압입하여 로터 서브 어셈블리를 제작 하였으며, 이후 스테이터 서브 어셈블리와 모터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하여 전기 모터 형성. 형성된 전기 모터는 세르비아산 블루트에 부착

판정

CBP는 세르비아산 임펠러와 블루트가 펌프 어셈블리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부분의 외국산 구성요소가 스템핑, 자화, 압입 등의 복잡한 공정을 통해 임펠러 및 블루트와 결합하여 펌프 어셈블리로 변형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세르비아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최종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은 중국산 임펠러이며, 캐나다에서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이므로 캐나다에서 공정을 통해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변화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최종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은 실제 유체를 이동시키는 주요 기능에 관여하나, 캐나다산 부품은 이러한 주요 부품을 단지 밀봉하고 결합하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중국산 부품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산 부품이 최종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더욱 높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결론

- ✓ 캐나다에서의 공정은 주요 부품인 중국산 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 최종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임펠러에 의해 부여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III 시사점

- 본 사례에서 펌프 엔드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은 임펠러이며, 외국산 임펠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해당 가공이 단순한 조립 및 결합 등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3089 (2021.02.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3089>
-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4>
- CBP Ruling NY N303043 (2019.04.18.), <https://rulings.cbp.gov/ruling/N303043>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